

수신 : 각 언론사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출입기자, IT 전문지 기자

발신 : 사단법인 오픈넷(담당: 상임이사 남희섭 hurips@opennet.or.kr 02-581-1643)

제목 :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배포일 : 2013 년 3 월 20 일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 저작권자들은 부당한 권리행사 중단해야!

최근 음악저작권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커피숍,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5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음악저작권 3단체는 대형 커피전문점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했고, 이제는 소형 매장에 대한 권리행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이런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권리행사이다. 왜냐하면 우리 저작권법은 소형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매장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합법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면 누구나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이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부 사업장에서만 음악을 함부로 틀 수 없도록 할 뿐이다. 가령 매장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는 음악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할 수 없고, 재생했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 제과점 등은 매장 내에서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 대형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음반은 시판용 CD는 물론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이나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되는 음악까지 포함한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음반”은 유형물이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된 음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법원은 노래방 기기(가요반주기)의 컴퓨터 칩(메모리 칩)에 잠시 음이 저장되는 것도 음반이라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1996. 6. 27. 선고 95나30774 판결). 더구나 저작권법은 반대급부 없는 음반의 공연은 음반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스타벅스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매장 음악 사용과 무관하다

이처럼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 이유는 2012년의 스타벅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스타벅스 판결은 매우 특수한 음반에 대한 판결일뿐, 보통 매장에서 재생하는 음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스타벅스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음반은 시중에 유통되는 음반이 아니라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주문제작한 음반이다. 따라서 이 음반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인지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판매용 음반이라면 스타벅스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음악을 매장에서 틀어도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자기 매장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 제작한 음반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스타벅스 판결 이후 매장에서 트는 음악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졌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저작권료 징수규정에도 없어

더 큰 문제는 음악저작권 3단체는 징수규정에도 없는 저작권료는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이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징수규정에 해당 항목이 있어야 하지만, 징수규정 어디에도 커피숍이나 일반음식적용 상대로 한 공연사용료 항목은 없다. 딱 하나 있는 것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 중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인데, 이것도 생음악 공연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생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런 징수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음반의 공연에 대한 징수규정은 둘 수 없다.

문화부는 왜 규제하지 않나?

음악저작권 3단체는 아무나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단체이다. 또한 이들이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저작권료 요율에 대한 문화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언어야 한다.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저작권료를 받은 경우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단체의 업무를 정지(6개월 이내)하거나 5천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업무정지 명령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단체의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문화부는 실태를 조사하고 저작권단체의 부당한 권리행사를 규제해야 한다. 사실 공연사용료는 한-EU FTA 협상에서도 문제가 되었으나 당시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의 요구를 “음악과 관련된 지재권 보호 제도로, 음식점,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반을 틀 경우 작사, 작곡가(저작권자) 뿐 아니라 공연가수, 음반제작자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협상단이 우려하는 것은 이 제도를 받아들이면 영세사업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EU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더 이상 음악을 듣기 힘들거나 심하면 고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지도 모를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외교통상부 - 한국 FTA 자료실 http://www.fta.go.kr/user/storage/str2_print.asp?idx=2731).

피해사례 신고는 오픈넷으로

이처럼 저작권단체의 부당한 권리행사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사단법인 오픈넷이 운영하는 사이트(www.opennet.or.kr/report-music-copyright)에서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오픈넷은 수집된 피해사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자영업자들에게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려고 한다.

* 별첨자료(관련 법령 규정, 판례 및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별첨자료 - 판매용 음반의 공연 관련 법령 규정 및 저작권료 징수 규정>

■ 저작권법 관련 규정

- 제2조 제5호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 저작권법 시행령

-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 스타벅스 대법원 판결

[2010다87474](#) 판결문은 아래 링크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s/PnnpsContent.aspx?serial=5764&kind=A>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위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근거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짐으로써 당해 음반의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음반제작자는 물론 음반의 복제·배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당해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능을 가지는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 “플레이네트워크사(Playnetwork, Inc. 이하 ‘PN사’라 한다)는 스타벅스 본사(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 Inc.)와 사이에 음악 서비스 계약(Music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스타벅스의 국내 지사인 피고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PN사로부터 이 사건 제1, 제2 음악저작물[My Girl과 Bring it on home to me를 말함]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장당 미화 30.79달러(운송료 3.79달러 포함)에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그 배경음악으로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재생시켜 공연한 사실”
- “그런데 이 사건 CD는 암호화되어 있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으며, 피고는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CD는 PN사의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피고 등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불대체물일 뿐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저작권료 징수규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2장 공연사용료

⑥ 레스토랑, 커피숍, 카페, 뷔페 등에서 생음악 공연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 고
1	66㎡이상 99㎡미만	23,000	
2	99㎡이상 132㎡미만	28,000	

3	132㎡ 이상 165㎡ 미만	34,000	
4	165㎡ 이상 231㎡ 미만	46,000	
5	231㎡ 이상 330㎡ 미만	57,000	
6	330㎡ 이상 495㎡ 미만	69,000	
7	495㎡ 이상 660㎡ 미만	81,000	
8	660㎡ 이상 990㎡ 미만	92,000	
9	990㎡ 이상	103,000	

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음악실연가협회

공연사용료에 대한 항목이 없음